



우디빙, 등 5인의 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죄 사건

38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2)刑终字第5321号
판결 일자	2012년 11월 15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상업비밀침해죄 및 저작권 침해죄 성립)
공소기관	북경시 하이디엔취 인민검찰원		
피고인	1. 우디빙, 2. 리위평, 3. 순샤오텐, 4. 송밍양, 5. 위안장리, 6. 쉹즈칭 (피고인 1은 상업비밀침해죄, 나머지는 저작권 침해죄로 기소됨)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7조, 제219조		
영업비밀	인터넷 게임 사이트 프로그램 소스코드		
키워드 (Keyword)	프로그램 소스코드(程序源代码), 불법취득(非法获取), 전송(电传), 양형부당(量刑过重)		

02 사건 개요

피고인 우디빙은 2010년 주하이 진산 소프트웨어 유한공사의 고급 개발책임자로 재직하였을 당시, 피고인 리위평이 소유하는 다른 게임 사이트를 위해 진산공사와의 비밀보호협약을 위반하고, 진산공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인터넷 게임 <협객세계>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피고인 리위평의 QQ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리위평은 2011년 6월에서 10월 사이, 타인이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자신의 <인연협객> 서버 단말프로그램으로 컴파일하여 피고인 순샤오텐, 송밍양과 함께 국외 서버를 빌려 게임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들은 <인연협객> 사이트를 피고인 위안장리, 쉹즈칭에게 양도하고, 위안장리와 쉹즈칭이 계속 <인연협객>을 운영하였다.

2012년 1월 11일 공안기관이 순샤오텐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피고인들을 상업비밀 침해죄 및 저작권 침해죄로 기소하였다. 1심법원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공소기관



피고인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

양형이 과중하다.

04 판결 요지

피고인 우디빙은 타인 수중의 게임엔진 프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업비밀보호 약정을 위반하고, 가지고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교환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그 행위는 상업비밀 침해죄를 구성하고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나머지 피고들도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가 없이 복제하고 사설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엄청난 액수의 이윤을 획득하였고, 그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므로, 행위가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한다.

본 사건 6명 피고인들이 사건 후 법정에서 심리 과정 중 모두 자신의 범죄행위를 여실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비교적 좋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본 사건의 위법 소득이 이미 사건 진행 중 확보되어 동결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법에 의거하여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처벌이 감경되어야 한다.

05 Key Point

본 사건은 컴퓨터 게임 사이트의 소스코드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사설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상업비밀침해죄와 저작권 침해죄가 중첩되는 다소 복잡한 사건이다. 2012년 중국법원 지식재산 사법보호 50건 전형 사례 중 마흔일곱 번째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소하였고, 상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양형 부당이 다투어지는 형사 사건으로 참고해 볼 만 하겠다.
